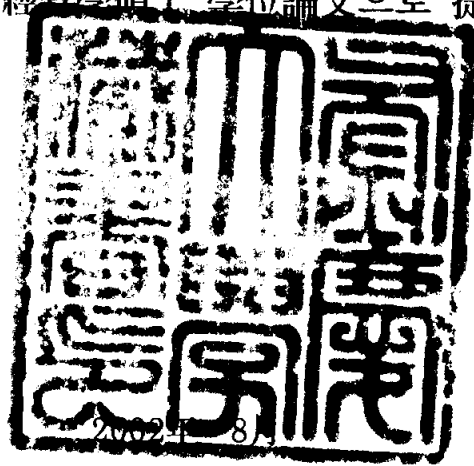


經營學碩士學位論文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朴 泳 柄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稅務管理專攻)

張 殷 碩

張殷碩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22日

主 審 經營學博士 金 泰 容 (印)

委 員 經營學博士 金 鎮 晁 (印)

委 員 經營學博士 朴 泳 炳 (印)

목 차

Abstract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은행회계의 특징과 회계정보	5
제1절 은행업의 정의와 현황 및 특성	5
제2절 은행의 활동과 위험	7
제3절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10
제3장 은행업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12
제1절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주요 회계처리 내용	12
제2절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의 주요 내용	19
제3절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주요 내용	37
제4절 기타 관련규정	50
제4장 우리 나라 은행업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제1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검토	60
제2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제3절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0

표 목 차

<표 1>	예금은행 시장규모	6
<표 2>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상품 취급현황	8
<표 3>	국민은행의 2001년도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대차대조표	10
<표 4>	성격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비교	60
<표 5>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비교	62
<표 6>	만기보유의 요건에 대한 비교	64
<표 7>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한 비교	65
<표 8>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비교	67
<표 9>	파생상품에 연계되지 않지만 감액손실이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에 대한 비교	71
<표10>	대손충당금 설정	72
<표11>	재분류시 차액처리에 대한 비교	74
<표12>	양도/교환/담보자산에 대한 비교	76
<표13>	지급보증에 대한 비교	79
<표14>	재무제표 양식 및 주식사항에 대한 비교	81

A Study on the Bank Accounting System: Problem Analyses and Remedial Suggestions

Jang, Eun-Seok

*Major in Tax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① to analyze problems in the current bank accounting system (BAS) in Korea and ② to provide remedi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future bank accounting system when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 Board (KASB) prepare a new statement for BAS.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in this paper are based on: ① a bibliographical survey of published references and ②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accounting rul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③ the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including the Korean Accounting Guide for Banking, ④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and ⑤ the American GAAP.

The remedi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future bank accounting system sugges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bank accounting, the KASB should, in near future, integrate all the rules spread out different statements in the Korean GAAP into a single statement for the BAS.

Second, the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Korean government should accept all the guidelines mentioned in Korean GAAP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en there is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SAP and GAAP, thos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s a footnote.

Third, the form of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improve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bank accounting.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8년 12월 10일 이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독규정(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감독규정상 회계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은행의 재무제표 이용자들로부터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즉, 감독기준이 지향하는 정책목적은 국제적 기준에 의한 회계원칙이 지향하는 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다른 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업종 회계처리의 독특한 구조하에서 맞이한 1997년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업종별 특히,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준칙이 1998년 말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오랜 관행(즉,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강한 회계처리)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적합성 및 회계기준 전체수준에서의 일관성을 갖는 새로운 기준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제정된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하 현행 준칙)은 다른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2월 10일 자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최초 제정되었으며, 1998년 12월 12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준칙에 의한 은행의 재무제표는 1999년 12월 말 결산기부터 최초로 작성·공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은 각 금융업의 영역별로 별도의 준칙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업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집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독특한 거래에 대한 처리기준이 FASB Statement (이하 SFAS) No. 5, 15, 65, 91, 114, 115, 118, 122, 125 및 133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의 회계기준은 은행업에 대해 별도의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다른 기준서에서 은행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기준)은 IAS No. 30에서 은행 및 유사한 금융기관들의 재무제표 공시방법을 정한 반면, 개별적인 회계처리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여타의 개별 기준서에서 은행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이 적용되는 기준서는 IAS No. 25, 32, 37 및 39 등이다.

그러나 1998년 말에 제정된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과 병행되면서 당초 목적했던 바를 모두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일시에 모든 기준을 개정 내지 제정함에 따른 물리적 한계 및 금융업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구 및 업계 실무상의 오랜 관행 등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금융업회계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2001년에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2002년 2월 1일에는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이하 기준서 시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현행 준칙과 기준서 시안을 검토하여 은행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업에 대한 회계기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은행업에 대한 회계기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국내외 서적 및 논문 등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은행업의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을 비롯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석들, 예를 들면, 해석 52-14(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 및 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현행 기준 및 국제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다른 일반 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한 현행 준칙과 기준서 시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기준서 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의 위상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기준서 체계의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회계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최근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과 국내 여러 은행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국내 은행 회계담당 실무자의 제반의견 등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종의 범위는 통화금융기관 및 예금은행에 속하는 일반은행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준칙의 검토과정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나라의 금융환경이 선진국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관련정보의 산출이 용이한 선진국의 수준을 맞추는 회계기준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 정

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은행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특수은행은 비록 일반은행과 영위하는 업무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상이하며, 동시에 많은 경우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기준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하는 은행업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은행에 포함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비록 주요 영위업무 및 경영정책이나 형태가 약간은 상이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회계규정에 준거한다는 점에서 함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은행회계의 특징과 활동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은행의 회계제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서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주요 회계처리 내용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주요 내용 및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주요 내용을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기준서와 비교 검토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은행업 회계기준서 시안을 중심으로 하여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은행회계의 특징과 회계정보

제1절 은행업의 정의와 현황 및 특성

1. 은행업의 정의

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산업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조)

은행업무는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고유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별도 인가를 얻어 은행이 직접 영위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법상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둘째,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셋째, 내·외국환, 넷째,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부수업무로는 첫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둘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무, 셋째,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2. 은행업의 현황

국내 금융기관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분류기준에 의거 통화창출기능의 유무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통화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분되며, 2000년 말 현재 예금은행에는 일반은행으로 시중은행(11개), 지방은

행(6개), 외국은행(43개/62개 지점),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특수은행으로 농협, 수협, 축협이 있다. 국내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금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1개에 달하는 은행이 퇴출이나 합병되었다.

2000년 말 기준 예금은행 시장의 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 434조원, 여신 306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이 많은 것은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불안과 예금자 완전보호가 2000년 말로 제한되면서 고객들은 안전성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량은행 중심으로 급속히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여신은 IMF 이후 자산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줄어들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가계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표 1> 예금은행 시장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수신		여신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1995년 말	207	16.3	170	14.1
1996년 말	241	16.4	200	17.6
1997년 말	297	23.2	239	19.5
1998년 말	331	11.4	230	-3.8
1999년 말	388	17.2	269	17.0
2000년 말	434	11.9	306	13.8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0. 12)

주) 1. 수신 = 예금 + 외화예수금 + CD + 채권발행

2. 여신 = 대출금 + 외화대출금

3. 은행업의 특성

은행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본질적 기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여 각 경제주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예금통화의 창출, 공급 및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매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 개별 은행의 경영위기나 도산이 전체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부의 금융,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따라 자금의 유·출입, 영업환경,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IMF체제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시장개방으로 은행산업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이며, 경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셋째, 자금조달 비용과 자금운용 수익률의 차이 등이 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이자부문 이익을 결정하고 수수료, 유가증권 매매 및 평가손, 영업경비, 총당금계정(대손, 퇴직)등이 비이자부문 이익을 결정한다.

넷째, 은행들은 미래상환능력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기업 등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금리, 주식, 부동산 등 거시 경제변수에 따라 자금유입 등에 영향을 받고,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은 은행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제2절 은행의 활동과 위험

1. 우리 나라 은행의 기업가치 창출활동

은행의 기업가치 발생원천은 수익창출활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영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장기금융과 단기금융의 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은행은 단기에금 및 대출업무, 환업무, 지급보증 업무 등 전통적인 단기상업금융 업무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은행 이외에 기타 금융기관은 보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은 단기 상업금융 업무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따라 주변업무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취급하여 왔다(<표 2> 참조).

<표 2> 우리 나라 은행의 금융상품 취급현황

단기상업금융 및 장기금융업무			단기금융업무				투신업무	주변업무	증권업무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채권발행	장단기대출	환매채	콜	상업어음	기업어음	C D	수탁	판매 및 관리	운용	리팩토링부드	보통증업부드	신용카드	M & A	인모수	매집	주출	자기상품보유
◎◎	×	◎	○ ¹	◎	◎◎◎	◎	◎	××	×	◎◎◎◎	◎ ²	◎							◎

- 주) 1. 고객으로부터 환매채(RP) 매수는 금지.
 2. 국공채에 한함.
 3. 자료 : 문종진·정익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영역확대 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경제분석, 제2권 제4호, 1996.11.

현재 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 재산신탁 등 각종 신탁업무, 카드업무, 팩토링업무,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간사 및 판매업무, 사모사채인수업무, 인수단 및 청약사무단에 참가할 경우의 주식인수업무,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 기관투자자로서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유·운용업무, 각종 수수료 업무 등은 직접 겸영하고, 기타 증권업무와 리스업무 등 일부 종합금융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2. 은행경영에 수반되는 위험

은행은 크게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상업은행(commercial bank)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은행은 기업이 직접증권(direct security)을 발행하여 흑자지출단위(surplus-spending units)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인수위험(underwriting risk)을 부담한다. 상업은행은 예금 또는 다른 부채를 대출 등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투자은행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증권을 매입하면 부담했던 위험이 없어지지만, 상업은행은 대출을 실행했다고 해서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이 완제 될 때까지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 특히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리스크 및 환율리스크가 추가된다. 우리 나라의 은행은 대부분이 상업은행이므로, 이하에서는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가치의 결정구조를 살펴본다.

은행의 기업가치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3요소로 구성된다.

은행기업가치=순수지분은행 가치+부채로 인한 세금효과-파산비용의 현가

부채가 없는 순수지분은행(all-equity bank)의 경우 시장 및 생산여건(이자율, 자원원가, 자본비용)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되지만 부채를 조달하기 시작하면 부채로 인한 세금효과와 파산비용이 기업가치 결정요소에 추가된다.

기업가치를 회계적으로 평가한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경제적 개념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가치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은행 대차대조표 항목에 내재된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제반 리스크를 회계적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둘

재, 우발채무 등 부외(off-balance sheet) 거래는 회계상 순자산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노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제3절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일반적으로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 어떤 회계정보가 이용자의 관심에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은행의 재무제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은행의 2001년도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대차대조표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민은행의 2001년도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2001.1-12.)			요약대차대조표 (2001.12.)		
항목	금액(억원)	구성비(%)	항목	금액(억원)	구성비(%)
1. 영업수익	109,939.1	100.0	1. 상품유가증권	64,141.5	4.1
(이자수익)	6,205.8	5.6	2. 투자유가증권	270,032.1	17.2
(수수료수익)	73,169.2	66.6	3. 대출채권	1,070,299.6	68.2
2. 영업비용	101,483.6	92.3	4. 자산총계	1,568,938.0	100.0
(이자비용)	47,208.7	42.9	1. 예수금	1,151,613.0	73.4
(판매관리비)	14,585.4	13.3	2. 차입금	125,560.5	8.0
3. 영업이익	8,455.5	7.7	3. 부채총계	1,479,802.6	94.3
4. 영업외손익	2,467.1	2.2	1. 자본금	14,984.9	1.0
5. 당기순이익	7,405.6	6.7	2. 잉여금	71,114.4	4.5
			3. 자본총계	89,135.4	5.7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의 2/3 가 수수료수익이며,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자산의 68.2%가 대출채권이며, 투자유가증권이 17.2%이고, 상품유가증권이 4.1%로 이들 3종류의 자산이 총자산의 89.5%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채가 총자본의 94.3%를 점하며, 그 중에서 예수금이 73.4%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행 재무제표를 보면, 금융자산 특히,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은행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상품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경우에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손익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 또한 지급보증의 경우 잘못되면 은행이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이러한 회계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회계정보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어야만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제3장 은행업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제1절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주요 회계처리 내용

우리 나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으로 구분하여 별표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 및 기타,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자산에서는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업무용 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국가 등에 대한 기증자산, 미결제현물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채에서는 가수금과 별단예금계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본에서는 이익잉여금과 이익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익 및 기타에서는 결산회계처리와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 및 해외 지점 등의 재무제표 환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와 연결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주요 사항

여기서는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 국가 등에 대한 기증자산에 대한 처리, 미결제현물환에 대한 처리, 가수금계정에 대한 사항, 별단예금계정에 대한 사항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손금 처리계산서상의 본점송금 보전액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난외계정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 같음)에는 난외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②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③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 후 선적서류 내도시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 내도시까지 “미확정지급보증”표시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④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 자행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⑤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 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⑥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⑦ 사채보증채무를 타행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은행은 보증채무 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은행은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⑧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⑨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⑩ 지급보증 거래는 난내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난외에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⑪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대지급이 이루어진 날에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2) 기타 자산에 대한 처리

첫째, 국가 등에 대한 기증자산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미결제현물환에 대한 처리이다.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자라도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셋째, 가수금계정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 회계처리 하는 계정으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수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① 출납잉여금, ②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금 입금, ③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 환입), ④ 동산, 부동산, 소유유가증권 등의 처분내 입금, ⑤ 원미만 끝전 수입, ⑥ 교환 회부할 매입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대금 영수증 수납액 등이 있다.

넷째, 별단예금계정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업무중에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타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기타 특정자금을 일시 예수하는 계정으로, 은행의 회계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정으로 고객에게 환급된다. 이러한 예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① 당좌거래 없는 자로부터 위탁받고 추심한 어음대금, ②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③ 당좌해약금, 사망자의 예금 등, ④ 대출금 가지금금의 정리잔금 및 환출이자(예금거래 없는 자의 경우), ⑤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징수금(예금거래 없는 자의 경우), ⑥ 자기앞수표, ⑦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손금 처리계산서상의 본점송금 보전액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大本점 송금 예정액은 기타부채(대과목)내의 “미지급금”계정(중과목)에 처리한다. 그리고 은행법 제40조에 의한 법정준비금으로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한다.

2. 손익 및 결산회계처리

여기서는 자산의 평가, 수익보정, 비용보정,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 해외지점 등의 재무제표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 중 채권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증가로 한다.

② ①항에 따른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의 공정가액은 평가대상 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무이표채 수익률곡선의 해당기간별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무이표채 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당해 채권발행자의 신용도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원화채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무이표채 수익률곡선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기준수익률을 기초로 한 평가수익률로 평가대상 원화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한다.

④ 외화채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무이표채 수익률곡선 또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등을 통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또는 유사증권의 거래가격(benchmark price)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수익보정과 비용보정

먼저 수익보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가 있는 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부도통지를 받은 매입외환 및 연체중인 신용카드계정 여신 등에 대한 미수수익

㉡ 결산일 전 영업일 현재 어음·수표부도거래처(어음교환소 규약에서 정하는 거래 정지처분대상을 말한다), 이자감면·유예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모든 채권의 미수수익

㉢ 전 ㉠ 또는 ㉡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② 제①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예금보험기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가 적용되는 기관¹⁾(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한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액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 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 국가, IMF 일반차입협정국가 및 자행본점 소재국가(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④ 해외지점의 경우 ②~③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기준에 따라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미수수익 보정내용을 결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미경과 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1)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3>에 의하여 산출된 것을 말한다.

비용보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미지급손비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② 정기적으로 납입키로 약정한 예금 등의 이자보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개별계좌마다 계약기간별(예시: 1년, 2년, 3년 등)로 일적수를 계산하여 소정이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 납입액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는 계좌는 중도해지계좌로 보고 일적수를 계산하여 중도해지이율에 의하여 요보정액을 산출 계상한다.

③ 이 밖에도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하고,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해야 한다.

3)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과 해외지점 등의 재무제표 환산

먼저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조정시기는 매월 최종 영업일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조정시기는 매월 1회 자체적으로 지정한 일자(결산시에는 결산일)로 한다.

②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은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부채에 대한 적용환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

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로 한다.

다음으로 해외지점 등의 재무제표 환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외지점(사무소 포함)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3.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따른다. 다만, 금융기관의 연결대상회사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 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분 제외)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며,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 시에는 은행계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증권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절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의 주요 내용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은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8년 12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3차례 개정되었다.

이 준칙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은행법 또는 기타 법(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준칙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준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차대조표 항목에 대한 회계

1)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이러한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상대적 유동성배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배열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혹은 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 기준 외에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열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과목 구분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 현금 및 예치금은 현금, 외국통화,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등으로 한다. 현금은 통화와 타점권으로 하며,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현찰로 하고, 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등에 원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하며, 외화예치금은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한다.

㉡ 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외화상품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및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화상품유가증권은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㉔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중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주식, 출자금,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외화투자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출자금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을 포함하며, 외화투자유가증권은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㉕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후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포함되므로 단순한 계정 재분류로 인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㉖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기금의 청산과정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은 새로운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아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㉗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금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원화대출금,²⁾ 외화대출금, 매입어음,³⁾ 매입외환,⁴⁾ 지급보증대지금금,⁵⁾ 팩토링채권,⁶⁾ 신용카드

2) 원화대출금은 고객에게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다만,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이라도 표시통화 및 대출·회수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대출금으로 본다.

3) 매입어음은 기업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⁷⁾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하며, 대출채권 중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에 대여한 금융기관대출금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식으로 기재한다.

㉞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으로 한다.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기타의 투자자산 등으로 하며, 비업무용자산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동산 등으로 한다. 그리고 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등으로 한다.

㉟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품, 공탁금, 타행간현송채권, 귀금속, 미회수내국환채권(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대리점, 출연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자산은 잡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어음의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매입어음을 직접 매각한 경우에는 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다만,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분에 대해서는 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 처리하는 외에 동 우발채무를 주식으로 기재한다. 만약, 단서의 방식에 따라 매각한 어음이 부도되어 어음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에 처리한다.

- 4)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대가로 매입하여 추심중에 있는 채권을 말한다.
- 5) 지급보증대지급금은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 소구채무 등을 금융기관이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 6) 팩토링채권은 고객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금의 선지급액을 대차대조표에 팩토링채권으로 표시하고,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표시하며,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금의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의 액면금액 전액을 팩토링채권으로 표시하고 고객에 대한 선지급액과 채권 액면금액의 차액은 팩토링채권미지급금으로 표시한다.
- 7) 환매조건부채권매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도하는 조건하에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잡자산의 내역은 주식으로 기재한다.

한편, 부채는 예수금, 차입금, 사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금으로 분류한다.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 등에 따라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양도성예수금, 기타예수금 등으로 한다. 예수금 중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부터 수납한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예수금 중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며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인 요구불예금과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예금의 납입·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인 저축성 예금을 구분하여 주식으로 기재한다.

㉡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차입금은 자금차입의 형태 등에 따라 원화차입금,⁸⁾ 외화차입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⁹⁾ 매출어음,¹⁰⁾ 신용카드채권매출 등으로 한다. 차입금 중 차입처가 한국은행,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 및 정부 등인 차입금은 차입처별로 자금차입의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식으로 기재한다.

㉢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은행법에 의한 발행금융채권을 발행

8) 원화차입금은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다만, 원화로 차입한 채무액이라도 표시통화 및 차입·상환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차입금으로 본다.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10) 매출어음은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한 경우,¹¹⁾ 이를 사채로 분류한다. 사채는 원화사채와 외화사채 등으로 한다.

㉔ 상기의 부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¹²⁾ 신탁계정차,¹³⁾ 미지급외국환채무,¹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팩토링채권미지급금, 수입보증금,¹⁵⁾ 이연법인세대 등은 기타부채로 한다.

㉕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지급배당금, 선수수익, 타행간현송채무, 수입제세,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내국환채무(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대리점, 선불카드채무, 직불카드채무, 지로수입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부채를 잡부채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잡부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회계

1) 수익인식기준

-
- 11)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상법상의 사채와 동일하므로 일반기업 및 타 금융업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한다.
 - 12) 지급보증충당금은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을 의미한다.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으로 인한 대지급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 등 주채무자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 13) 신탁계정차는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계정에 공여운용할 경우에 신탁계정에서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한다.
 - 14) 미지급외국환채무는 매도외환과 미지급외환으로 한다.
 - 15) 수입보증금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취득한 수입결제대금, 부동산임대보증금, 대여금고보증금 등으로 한다.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에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그리고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율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 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을 하는 경우에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동 가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이자로 처리한다.

㉢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2)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영업손실), 경상이익(경상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한다.

둘째, 영업수익은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

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이자수익은 예치금이자, 상품유가증권이자, 투자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등으로 한다.

㉠ 수수료수익은 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로서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중도해지수수료, 기타수입수수료 등으로 한다.

㉡ 기타영업수익은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수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영업잡수익 등으로 한다.

셋째, 영업비용은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고, 이자비용은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으로 한다.

㉢ 수수료비용은 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지급수수료, 신용카드관련수수료,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한다.

㉣ 기타영업비용은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 신탁업무운용손실,¹⁶⁾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기타영업잡비용 등으로 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금융기관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손익계산서에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에는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계정별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넷째, 영업외수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16) 신탁업무운용손실은 원금보전약정이나 확정배당약정에 의하여 고유계정이 부담한 보전보조금으로 한다.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한다.

다섯째, 영업외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감액손실, 투자채권감액손실,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 및 기타영업외비용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기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퇴직금추계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지급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결제하는 조건으로 유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등을 할부매매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익은 전액 처분연도에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수익창출활동이 사실상 판매로서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기준에 따라 처분손익을 인도시점에서 인식하고,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끝으로 특별이익은 비정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특별이익 등으로 하며, 특별손실은 비정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등으로 한다.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유가증권의 평가이다.

㉠ 상품유가증권 중 주식 등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

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㉔ 상품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㉕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산정방법별로 구분하여 액면가액, 취득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상품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채권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증가로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최근 거래일의 증가로 한다. 다음으로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증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증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¹⁷⁾이 제시한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둘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다.

㉖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㉗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 중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㉘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

17) 이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 손실 또는 지분법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피투자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㉔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 출자금 등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㉕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㉖ 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만기보유채권을 제외한 채권("중도매각채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18)

㉗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은 제외한다)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지분법평가손실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은 제외한다)은 이를

18)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을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금액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19)

㉞ 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채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㉟ 회계연도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품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㊱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은 "(25-1)"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㊲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에 대하여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지분법평가액(지분법적용대상 주식에 한한다) 및 장부가액을 주식으로 기재하고, 채권 중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별²⁰⁾로 액면가액, 취득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㊳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증시안정기금의 순자

19)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차기이 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하고,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시에는 투자주식감액손실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0)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① 당해 회계연도에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일 현재 구분관리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 ② 법령등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하여야 할 채권, ③ "26아"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채권은 만기보유채권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구분하여야 한다.

산가액(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중 당해 회사 지분 상당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㉔ ㉒과 ㉓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경우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감액일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며, ②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①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으로 감액한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㉕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은 분배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배당·출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셋째,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다.

㉖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 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²¹⁾의 금액과 분류기준, ㉢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등은 주석으로 공시하여

21)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 ②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 ③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27"에서 같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 ④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① 6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③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④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⑤ 폐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자, 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야 한다.

㉔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지급보증충당금 설정이다.

㉕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㉖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을 하지 않은 지급보증과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채권 재조정²²⁾의 회계처리이다.

㉗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이를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㉘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²³⁾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

22)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3)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평가는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한 대손상각비만

율은 당해 채권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㉔ 채권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채권 재조정의 내용 등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여섯째,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이에 대한 손익의 처리이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이다.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외지점 등의 회계처리는 현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그러나, 현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이 준칙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4) 주식사항 등

주식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②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③ 타은행 및 금융시장과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㉑ 국공채 및 기타 중앙은행에 재할인 가능한 증권, ㉒ 중앙은행과의 거래잔액, ㉓ 타은행에의 예치금, ㉔ 기타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에의 예치금, ㉕ 타은행으로부터의 수신금액, ㉖ 기타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

을 계상한 것이며, 재조정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위험을 별도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부터의 수신금액, ㉔ 기타 수신금액을 공시한다.

④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등)와 약정사항의 종류별 금액(우발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가 확정된 우발채무와 주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를 구분하여 표시)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㉑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과 신용장개설 등과 관련된 은행결제보증
- ㉒ 특정거래와 관계되는 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 ㉓ 수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인수로 인한 우발채무
- ㉔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지 않는 판매 및 재구매 약정사항
- ㉕ 파생금융상품 관련 약정 사항
- ㉖ 어음발행한도, 신주인수한도, 기타의 약정사항 등

⑤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등)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⑥ 대출채권,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각각에 대한 주요 국가별, 고객별 및 산업별 비율

⑦ 중요한 외화자산·부채의 해당 외화금액 및 U.S. Dollar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⑧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가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⑨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고유계정이 부담하게 될 금액

⑩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주요거래내용(기초잔액, 기중증감액, 기말잔액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등

⑪ 지급보증의 종류별 총당금 설정기준 및 금액

⑫ 후순위 차입금(사채의 발행을 통해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의 차입처별 금액과 차입조건

⑬ 대여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금액

⑭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주요 내용

이 기준서는 은행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를 위하여 다른 기업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은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며,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목적에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다.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업”은 은행법 제2조에 따라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 준칙 문단2-2; IAS 30 par. 2)

(나)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은행법 2조①의 2)

(다)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중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증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IAS 32 par. 5)

(라) “금융자산”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및 다른 기관의 지분증권을 통칭한다. (IAS 32 par. 5)

(바)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제공해야 하거나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통칭한다. (IAS 32 par. 5)

(삐) “지분증권”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5.(나))(삭제 검토)

(쌌)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5.(라))(삭제 검토)

(애)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5.(가))(삭제 검토)

2. 주요 회계정책

은행업의 특성상 동일한 거래와 회계사건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위험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에 따라 인식과 측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AS 30 par. 8)

- ① 은행업의 일반적인 위험과 불확실성
- ② 주요 수익항목들의 인식
- ③ 단기매매증권 및 장기투자증권의 구분근거와 포함되는 증권의 종류 및 평가방법
- ④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계처리
- 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회계처리
- ⑥ 증권의 대차거래의 회계처리
- ⑦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 ⑧ 대출채권의 종류별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결정 근거와 회수불능 대출채권의 대손처리 근거
- ⑨ 확정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충당금
- ⑩ 신탁업무관련 회계처리
- ⑪ 비업무용자산의 평가 및 매매손익의 인식
- ⑫ 법인세비용 일반사항
- 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 ⑭ 해외지점 등의 재무제표 환산 회계처리
- ⑮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거래나 회계사건과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등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거래나 회계사건의 구분
- ⑯ 변경 예고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정책
- ⑰ 기타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등

3. 대차대조표

1) 자산 및 부채의 분류

①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하고, 개략적(상대적)인 유동성의 순서대로 배열한다. 동일한 분류내의 계정과목은 유동성과 과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는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결제되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현 준칙 문단5; IAS 30 par. 18)

②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최소한 현금 및 예치금, 매매용자산, 장기투자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현 준칙 문단6)

③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기매매증권, 위험회피거래와 관련이 없는 파생금융상품 및 기타 금융 또는 비금융상품을

매매용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 11. 가) 또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모사채나 기업어음 (CP)은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3-2)

⑤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만기보유증권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59와 60)

⑥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기금의 청산과정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은 새로운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아 은행의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현 준칙 문단10-2;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18)

⑦ 대차대조표상 부채는 최소한 이자부예수금, 무이자부예수금, 차입금, 장기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14)

⑧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금으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15. 가)

⑨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16. 가)

⑩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은행법에 의한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 이를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현 준칙 문단17. 가)

2) 자산의 평가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은행이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하고, 최초의 인식금액은 제공한 자산이나 수취한 부채의 대가의 공정가액에 거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IAS 39 par. 27, 66)

②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중 당해 은행지분 상당액으로 하고,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은 분배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계상하고 동 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배당·출자금의 반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현 준칙 26. 타; 26-5;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문단 18)

3) 주식 및 공시

주식 및 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 대차대조표의 본문에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7, 32-3; IAS 30 par. 19)

(가) 자산

- (1) 한국은행예치금(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추가검토
- (2) 타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3) 기타 단기금융상품에의 예치금
- (4) 이자부 예치금과 무이자부 예치금
- (5) 국·공채와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이 가능한 기타증권
- (6)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국채와 기타증권
- (7) 장기투자증권(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 (8) 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권
- (9)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
- (10) 대출채권의 고정이자율분과 변동이자율분 구분

(나) 부채

- (1) 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
- (2) 기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예수금
- (3) 기타의 예수금
- (4)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기타의 양도가능한 증서의 발행에 의한 예수금
- (5) 예금보험한도액(예, 5천만원 이상)이상 구좌예금총액 (AAG 11.32)
- (6) 지급어음 등 기타 문서에 의해 증명되는 부채
- (7) 기타 차입금

둘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이나 부채는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또한 해당 자산과 부채의 회수나 결제시 상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IAS 30 par. 23)

끝으로,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보고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표준양식사례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약된 계정과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5. 다, 5-5)

4. 손익계산서

1) 손익의 인식

①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현 준칙 문단19. 가)

②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

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현 준칙 문단19. 나)

③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 당해 금융기관지분 상당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현 준칙 26. 타)

2) 손익의 분류와 공시

①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은행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한다. 은행의 손익계산서의 본문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현 준칙 문단21, 22; IAS 30 par. 9, 10)

- (가) 이자수익과 이와 유사한 수익
- (나) 이자비용과 이와 유사한 비용
- (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
- (타) 배당금수익
- (마) 수수료수익과 수수료비용
- (바)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차손익
- (사) 장기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차손익
- (아)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손익
- (재) 일반관리비용
- (차) 기타 영업수익과 기타 영업비용

② 손익항목은 위험회피거래와 관련되거나 “문단19”에 의거하여 상계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한다. (IAS 30 par. 13)

③ 다음의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통상 순액으로 표시한다. (IAS 30 par. 15)

- (가)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및 장부가액 변동

(내)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대) 외환거래

④ 순이자수익은 차입금과 대출금의 이자율과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은행의 이자수입자산과 이자지급부채의 연평균이자율과 연평균잔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AS 30 par. 17)

⑤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보고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표준양식사례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약된 계정과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20. 사, 20-1)

3) 대출채권에 대한 손실

① 대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현 준칙 문단27. 가)

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대손처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결되어 대손처리액이 최종 확정될 때 대손처리를 하거나, 또는 차입자가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상환기일에 사실상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다. (현 준칙 문단27; IAS 30 par. 49)

③ 대출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IAS 30 par. 43)

(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당기변동내용을 대손충당금 전입액, 대손처리액, 전기에 대손처리 되었던 금액 중 회수액으로 구

분한 금액

(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의 합계액

(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무수익대출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과 결정 근거

(라)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기재한 경우 채권별 대손충당금(현 준칙 문단29-다)

(마)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현 준칙 문단27-라 1)

(바)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현 준칙 문단27-라 1)

(사)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현 준칙 문단27-라 3)

(아) 회수불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현 준칙 문단27-라 4)

(자)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현 준칙 문단 27-라 5)

5. 주식 및 기타 사항

①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적용한다.

② 자본변동표의 작성과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적용한다.

③ 다음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은 주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32-3; IAS 30 par. 26)

(가) 은행이 임의로 취소할 경우 상당액의 벌금이나 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신용공여약정의 성격과 금액

(나) 대차대조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의 성

격과 금액으로서 다음에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 (1) 재무적 보증으로 이용되는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 은행인수 보증 및 대기신용장개설 등
-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및 대기신용장개설 등을 포함하는 거래관련 우발채무
- (3) 선적상품을 담보로 하는 선하증권과 같이 상품의 이동과 관련되고 단기에 자동으로 청산되는 무역관련 우발채무
- (4)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지 않는 판매와 환매 약정
- (5) 스왑, 옵션 및 선물 등을 포함한 이자율 또는 환율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 약정사항
- (6) 어음발행한도, 회전인수신용한도 및 기타 약정사항
- (7)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매입어음을 매각한 경우(현 준칙 11-3)

④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만기별 분석자료를 주석으로 기재한다.(현 준칙 문단32-5; IAS 30 par. 30)

이 경우 개별자산과 부채의 만기는 전체만기기간, 상환일 또는 이자율 변동예상일까지의 잔여기간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또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간별 만기분류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IAS 30 par. 33)

- (가) 1개월 이하
-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다) 3개월 초과 1년 이하
- (라) 1년 초과 5년 이하
- (매) 5년 초과

⑤ 위의 기간들은 경우에 따라 합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출채권을 1년 이하의 만기도래분과 1년 초과인 만기도래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환금액을 계약상 정해진 기간에 따라 만기를 분류한다.

⑥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대응 정도와 다른 자금조달원의 필요성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이 채택한 만기분류기준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IAS 30 par. 34)

⑦ 예금과 선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인출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만기가 계약상 만기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의 만기가 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유동성위험을 반영하므로 계약상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IAS 30 par. 36)

⑧ 은행의 일부 자산은 계약상의 만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회수예상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회수예상일은 과거경험을 등과 같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하며 추정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IAS 30 par. 37)

⑨ 부채를 조기상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일과 조기상환에 따른 유동성과 이자율 위험을 관리·통제하는 방법 등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기타설명자료에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IAS 30 par. 39)

⑩ 자산, 부채 및 부외항목들이 지역별, 고객별, 산업별 또는 기타 위험별로 중요하게 편중되었을 때와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자금조달결과 등에 의한 수익이 편중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AAG 1.42)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중요한 환위험에 노출된 순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 32-6; IAS 30 par. 40)

⑪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부채의 총액과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성격과 장부가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32-8; IAS 30 par. 53)

⑫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32-7, 12, 13)

(가) 중요한 외화자산·부채의 해당 외화금액 및 U.S. Dollar 기준

으로 환산한 금액

- (나) 단기매매외화유가증권의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한 내역(현 준칙 문단8-1)
- (다) 장기외화투자증권은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한 내역(현 준칙 문단9-2)
- (라) 대여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금액
- (마) 대출채권 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융기관대출금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른 구분(현 준칙 문단11. 다)
- (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를 잡자산 또는 잡부채로 통합하여 표시한 경우 잡자산 또는 잡부채의 내역(현 준칙 문단13-1, 18-6)
- (사) 예수금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 등에 따른 구분(현 준칙 문단15. 다)
- (아) 통화성예금인 요구불예금과 특정조건이 있는 기한부예금인 저축성예금의 구분(현 준칙 문단15-5)
- (자) 차입처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정부 등인 차입금은 차입처별로 자금 차입의 형태 등에 따른 구분(현 준칙 문단16. 다)
- (차) 후순위차입금(사채의 발행을 통해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의 차입처별 금액과 차입조건
- (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기준
- (타) 일반관리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계정별 내역(현 준칙 문단22. 라)
- (파)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신탁업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신탁업무

① 은행은 통상 재산의 수탁자로서 개인, 신탁기금, 퇴직연금기금 및 기타의 기관을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운용한다. 순수실적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은행의 자산이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이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탁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과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에서의 신탁업무는 보호예수(예탁)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 준칙 문단32-9; IAS 30 par. 55)

②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신탁계정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중 고유계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 준칙 문단32-9)

③ 판매한 신탁상품의 관련손익이 은행에 모두 귀속되는 순수약정신탁의 경우는 관련 신탁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총액기준으로 인식하고 그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의 자산계정 명칭은 순수약정신탁운용자산으로 하고 부채계정 명칭은 순수약정신탁예수금으로 한다. (연구보고서안)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은행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대출정책, 거래의 종류, 그리고 거래의 요소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다음의 항목들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 차지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주석으로 기재한다.(IAS 30 par. 57, 58)

(가) 대출채권과 예금 그리고 인수어음 및 약속어음(이 경우 공시 내용은 기초 및 기말잔액 그리고 회계기간중의 변동사항이다.)

(나) 주요한 수익의 종류, 지급이자 및 지급수수료

(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액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대손충당

금액

(라) 취소불가능한 약정사항 및 우발채무 그리고 부외항목에서 비롯되는 약정사항

제4절 기타 관련규정

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건전성규제) 제5의 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계정 처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하며, 외국환은행(국외점포 포함)은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

①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자산계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은 외화타점예치금, 외화정기예치금, 외화기타예치금으로 구분 표시, 3. 외화증권은 외화상품유가증권과 외화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 4. 외화대여유가증권은 외화대여상품유가증권과 외화대여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 5. 매입외환은 수출환어음,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약속어음(P-Note) 및 기타로 구분,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은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전대차관자금대출 및 기타로 구분, 8. 은행간외화대출은 외화타점대, 외화콜론, 은행간외화대여금으로 구분,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은 국내본지점과 국외본지점으로 구분,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은 외화미수금, 외화미수수익, 외화가지급금, 외화선급비용,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및 기타로 구분,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은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관련 상품 및 기타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 22. 역외외화자산은 역외외화예치금, 역외외화대출금, 역외외화증권, 역외외화본지점,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역외파생상품자산, 역외기타외화자산으로 구분,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③ 부채계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외화예수금은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정기적금, 외화별단예금으로 구분,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은 외화타점차, 은행차입금, 외화표시원화차입금, 전대차입금, 외화수탁금 및 기타로 구분, 6. 외화발행금융채권은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과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으로 구분,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은 수입담보보증금,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및 기타로 구분,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은 국내본지점과 국외본지점으로 구분, 13. 기타외화부채는 외화미지급금, 외화가수금, 외화선수수익, 외화미지급비용,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지급보증충당금 및 기타로 구분, 14. 외화파생상품부채는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관련 상품 및 기타파생상품부채로 구분, 15. 역외외화부채는 역외외화예수금, 역외외화차입금,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역외외화본지점,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역외파생상품부채, 역외기타외화부채로 구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④ 다음과 같은 사항은 난외계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확정외화지급보증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²⁴⁾과 기타외화보증²⁵⁾으로 구분,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은 수입신용장발행,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차관외화보증, 기타미확정외화보증으로 구분,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은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기타외화약정으로 구분,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기타 파생상품매입, 기타 파생상품매도로 구분.

⑤ 외국환은행은 위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위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 기타 사항

외화 계정과목 이외에 ① 외국환매입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② 외국환매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③ 외화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④ 외화파생상품평가 등에 관한 회계처리방식, ⑤ 기타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준을 규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2.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²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주요

24) 이는 인수와 수입물품선취보증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25) 이는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26) 이 기준은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회계처리

①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하며,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외화표시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② 파생상품은 거래시점에서 매매목적거래,²⁷⁾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거래²⁸⁾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외화표시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장내거래²⁹⁾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의 증가로 한다. 단, 평가일 현재의 증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증가에 의한다.

⑤ 장외거래³⁰⁾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7)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8)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장내(Exchange)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30) “장외(Over-The-Counter)거래”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 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 위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직전 영업일의 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 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증거금 등은 기타 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 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하며,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 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 현물환의 실물인수도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 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2) 위험회피회계

㉠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

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³¹⁾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³²⁾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③ 베이스스 스왑³³⁾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스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스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④ 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인 고정 금리부 금융자산(부채)과 조달·운용 관계에 있는 변동 금리부 금융부채(자산)가 식별 가능한 경우, 그 식별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액 위험회피수단 이자율스왑 내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에 따른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평가손익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매도옵션을 이용한 재무제표상의 기존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해당 매도옵션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을 결합한 합성상품의 잠재적 평가이익이 잠재적 평가손실과 같거나 초과

31)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32)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3) “베이스스 스왑(basis swap)”이라 함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옵션을 이용한 재무제표상의 기존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해당 매도옵션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결합한 합성상품의 유리한 잠재적 현금흐름변동이 불리한 잠재적 현금흐름변동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칼라³⁴⁾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보며, 매도스왑션³⁵⁾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도 매도옵션으로 본다.

⑥ 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①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³⁶⁾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②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34)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35) “스왑션(swaption)”이라 함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36)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의하여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㉞ 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㉟에 의한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㉟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㉟과 ㉞의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무이표채 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㊱ ㉟과 ㉞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 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자율선도거래³⁷⁾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④ 주식관련선도거래³⁸⁾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 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⑤ 통화선물거래³⁹⁾의 계약금액은 통화선도거래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⑥ 이자율선물거래⁴⁰⁾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⑦ 주가지수선물거래⁴¹⁾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37)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38)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39)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40)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4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⑧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⑨ 통화스왑거래⁴²⁾의 계약금액은 통화선도거래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⑩ 이자율스왑거래⁴³⁾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⑪ 주식관련스왑거래⁴⁴⁾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⑫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⁴⁵⁾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⑬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⁴⁶⁾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⑭ 주식관련옵션거래⁴⁷⁾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⑮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CDS (credit default swap), TRS (total return swap), CLN (credit linked note)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계약조건

42)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43)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44)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45)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46)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47)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에 따른 지급이 채무불이행시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용도와 같은 기초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채무불이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 계약을 지급보증으로 보아 ㉠ 신용위험보장매도은행은 계약금액을 신용과생상품매도항목으로 하여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액은 계약기간동안 배분하여 보정처리하며, ㉡ 신용위험보장매입은행은 계약금액을 신용과생상품매입항목으로 하여 관리하고 수수료 지급액은 계약기간동안 배분하여 보정처리한다.

한편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신용도와 같은 기초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 신용위험보장매도은행은 계약금액을 신용과생상품매도항목으로 하여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액은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한 후 공정가액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며, ㉡ 신용위험보장매입은행은 계약금액을 신용과생상품매입항목으로 하여 관리하고 수수료 지급액은 파생상품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정가액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제4장 우리 나라 은행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은행회계처리준칙의 검토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리 나라 은행업도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현행 은행회계준칙을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성격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비교

성격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성격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성격	은행의 특수성을 강조	일반기업과의 일관성 강조	일반기업과의 일관성 강조
적용 대상	은행	금융기관	은행업
주요 내용	재무제표의 공시 및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재무제표의 공시	재무제표의 공시
기준서의 지위	업종별 준칙 우선	모든 기준서는 동등	모든 기준서는 동등
감독기준 인정 여부	회계관행 및 외국환회계의 경우 인정	감독규정 없음	감독규정 불인정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에서는 은행 재무제표의 공시 및 인식과 측정을 모두 적용토록 함으로써 은행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특수한지에 대한 언급

이 없이 기준을 나열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수성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규정을 전체적으로 나열하여 이것이 일반기준과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적에서 은행업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업종별로 별도 준칙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므로 사실상 적용 대상은 은행일 뿐이며, 인식과 측정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준칙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회계관행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음으로써 은행업 감독규정을 회계처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환회계의 경우 외국환회계처리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업 감독규정을 회계처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수성보다는 일관성을 강조하여 IAS 30은 은행 재무제표의 공시위주이고, 인식과 측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IAS 30의 적용대상은 은행과 금융기관이고, 모든 개별적인 기준서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은행감독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준도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은행업의 특수성보다는 일반기업과의 일관성을 강조하여 은행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IAS에 비해 기준/해석 등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은행업에 대한 처리가 보다 명료할 뿐이지 이것이 특수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주제별로 기준서(statement)화 되어 있고 개별적인 기준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감독규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비교

금융자산(financial instrument)의 분류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비교

구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정의	정의 없음	정의함	정의함
금융 자산의 범주	대출채권은 상품별로 구분하고, 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매매용 금융자산, 만기보유 투자자산, 자기창설 대출자산, 중도매각 금융자산의 4가지 범주로 구분	대출채권, 부동산저당대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하고, 채무증권과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해서만 만기보유용, 중도매각용, 매매용으로 구분함

우리 나라 준칙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대출채권을 대출상품별 구분만 하고 있을 뿐 대출채권의 증권화 및 양도거래활성화 추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유가증권의 경우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미국식으로 분류하고 주식은 분류가 없으며, 여신성 유가증권(CP, 사모사채)은 형식은 유가증권이면서 대손충당금 계상 등을 볼 때 사실상 대출채권으로 취급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① 현금, ② 타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③ 상대방이 승인한 조건 하에서 다른 기업과 금융증서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④ 다른 기업의 지분증서를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을 매매용 금융자산(a financial asset and liability held for trading),⁴⁸⁾ 만기보유 투자자산(held to maturity investments), 자기창설 대출자산(loans and receivables originated by the enterprise),⁴⁹⁾ 중도매각 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 financial assets)⁵⁰⁾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IAS 39 par. 10). 이 경우 대출채권도 이러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분류

48) 이에 대한 파생상품(derivative)이 포함된다.

49) 이에선 인수합병분 및 신디케이션 부분이 포함된다.

50) 위의 3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별 인식과 측정기준이 다르다.

미국의 회계기준서(SFAS 65)에서는 일반적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부동산저당대출(mortgage loan)에 대해서는 매매용(held for sale)과 투자용(held for investments)으로 구분하여 인식과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채무증권(debt securities)과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에 대해서만 만기보유, 중도매각, 매매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3. 만기보유의 요건에 대한 비교

다른 금융상품들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해, 만기보유자산은 역사적원가로 평가되므로 만기보유자산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만기보유(held to maturity)의 요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의 만기보유 요건에 대한 규정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서에 비해 매우 허술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9, 87)에서는 금융상품이 만기보유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만기보유의도(positive intent)와 만기보유능력(ability to hold to maturity)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특이한 것은 만기보유로 분류하던 자산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수준 이상으로 매각, 이전 및 중도상환권리(put option)를 행사했을 경우, 기존의 모든 만기보유자산을 중도매각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와 향후 2년간은 어떠한 자산도 만기보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 만기보유의 요건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요건	명확한 의도와 만기보유 능력	만기보유에 대한 명확한 의도(positive intent)와 만기보유 능력(ability to hold to maturity)을 동시에 보유	명확한 의도와 만기보유 능력
적용대상	채무유가증권	자기창설 대출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채무유가증권
적용대상 제외	만기가 불분명한 채권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자율, 위험, 유동성 필요, 대체투자자산, 조달원의 변화 및 환율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발행자가 원가 이하로 농자산을 청산할 권리가 있는 경우	국제기준과 거의 동일함
만기보유 의사 파기시 제한	없음	만기보유로 분류하던 자산의 중요하지 않은 수준 이상으로 매각, 이전 및 중도상환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기존의 모든 만기보유자산을 중도매각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년도와 향후 2년간은 어떠한 자산도 만기보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언급 없음
만기매각으로 인정	-1년 이상 보유하고 만기까지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만기나 call date에 가깝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때 -이미 대부분의 금액을 계획한 바에 따라 회수하였을 때 -비반복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업의 통제 밖의 사유로 처분하였을 때	-3개월이라는 언급 있음 -대부분의 금액을 계획한 바에 따라 회수하였을 때(최소 85%로 구체화)
예외 매각 인정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발행자 신용의 중요한 훼손 -세금감면의 폐지 및 중요한 축소를 가져오는 세법 변경 -만기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기업결합 또는 사업부 처분 -법령 등의 제한 및 요구사항의 변경 등	국제기준과 동일
만기보유 능력 불충족 사례	보유능력이란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만기까지 보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조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제한할 수 있는 현재의 법적인 혹은 다른 제한사항이 적용될 경우	구체적 언급 없음
의도와 능력의 평가주기	언급 없음	최초 인식시 및 매 대차대조표일	국제기준과 동일

미국기준(SFAS 115)도 명확한 의도와 만기보유 능력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근본 취지가 같으나 적용대상 금융상품을 채무증권(debt securities)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2년간은 어떠한 자산도 만기보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게 하는 위의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 국제기준과 다르다.

4.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한 비교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대출채권의 취득시기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대출약정만 한 경우에는 B/S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계약 조건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국제기준과 동일
유가증권의 취득시기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함	정형화된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매체결일과 결제일 중 선택 가능(처분시는 결제일임)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로 함
취득가액	액면가로 인식하고 수수료 등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	공정가치에 거래비용을 가산한 금액	원금+수입수수료+직접비용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에서는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에만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대출채권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출약정만 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액면가로 인식하고, 수수료 등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이 관행화 되어 왔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취득시기를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becomes a party to the contractual provisions of the instrument)로 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매입의 경우에는 매매체결일(trade date)과 결제일(settlement date) 중 선택 가능하지만, 처분시는 결제일로 하고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무조건적 수취채권(unconditional receivable) 및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은 각각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및 계약일자(commitment date)에 인식하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정계약, 계획된 미래거래 등은 제외된다. 또한 취득가액은 공정가치에 거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공정가치는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우선 적용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없을 때는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외부전문가 등에 지불한 수수료 및 관련 조세 등은 거래비용에 포함되지만 할인/할증액 및 내부관리비용은 제외된다.

미국의 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의 취득시기만 매매체결일로 할 뿐 그밖에는 실질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다.

5.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비교

일반적인 평가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파생상품에 연계되지 않고 감액손실의 사유도 없는(non-hedge, non-impairment) 금융자산의 평가를 말한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원가 평가 대상	만기보유 채권과 주식	자기창설 대출자산, 만기보유 투자자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일반적인 대출채권, 투자용 부동산, 저당대출, 만기보유채권 및 지분증권
공정가액 평가 대상	시장성 있는 주식, 중도매각채권, 시장성있는 장기보유 지분증권	매매용 금융자산과 중도매각 금융자산, 은행이 임의 처분가능한 담보용 자산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저가법 평가대상	없음	없음	매매용 부동산, 저당대출
채무증권에 대한 적용 이자율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
평가차액의 처리	-상품유가증권은 당기손익 -중도매각채권은 자본조정 -시장성있는 장기보유 지분증권은 자본조정	-매매용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기손익 -중도매각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혹은 자본조정 중 선택	-매매용 부동산, 저당대출의 평가손실은 당기손익 -중도매각 금융자산은 자본조정
공정가치의 정의	정의 없음	자산은 교환될 수 있고, 부채는 상환될 수 있는 금액	국제기준과 유사함
공정가치의 산정	지분증권은 해당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채무증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활발히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표된 호가(자산은 매수호가, 부채는 매도호가)	구체적인 언급 없음
소량거래에 대한 조정	소량거래에 대한 조정 없음	소량거래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	소량거래에 대한 제한 없음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에서는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경우 원가(amortized cost)의 개념이 없으며, 채권

의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에 한하여 원가를 사용하므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기준과 동일하며,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성 있는 주식만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그 외의 경우는 원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채권의 원가 산정 시에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며, 처분비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콜가능 자산에 대한 만기산정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으로는 상품유가증권(시장성 있는 주식 및 채권), 중도매각채권 및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이 있으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중도매각채권과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차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의 산정은 해당 일의 종가(해당 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하며, 활발한 거래가 없는 소량거래의 경우에도 조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① 관련시장의 종가,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 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 ③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④ 채권 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공정가치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기 창설 대출자산, 만기보유 투자자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⁵¹⁾을 원가 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권의 원가 산정 시에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며, 처분예상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콜가능 자산에 대한 만기산정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매매용 금융자산과 부채 및 중도매각 금융자산에 대하여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전자에 대한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후자에 대한 차액은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결정될 수 있는 경우⁵²⁾에 한하여

51) 이는 원래 공정가치 평가대상이나 시장에서 호가가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52) 이는 ① 합리적인 공정가치 추정범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와 ② 일정 범위내의 여러 추정의 확률이 평가되어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기손익 혹은 자본조정 중 회계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치란 자산이 교환될 수 있고,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활발히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호가가 있는 금융자산(대개 자산은 매수호가, 부채는 매도호가): 이 경우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아닐 경우(소량거래 등)에는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②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고 그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채무증서: 이러한 합리적인 예측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율은 신용상태, 잔존기간, 이자율, 및 통화 등이 당해 자산과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는 금융자산에 적용되고 있는 수익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적절한 가격결정모형이 있고 모형에 필요한 기초변수가 시장으로부터 신뢰할 만하게 측정될 수 있는 금융자산

또한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에서는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은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 가능하면 공정가액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처분에 제한이 있다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준에서는 대출채권과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동일하지만, SFAS 115의 적용대상 지분증권(공정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혹은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의 평가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PwC guide에 의하면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사례설명이 있으며, 처분예상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는 국제기준과 유사하며, 중도매각 금융자산에 대한 차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만, 그밖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소량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담보부 채권 및 증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담보부 이서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공정가치를 적용

② 매매용 부동산저당대출(mortgage loans held for sale)의 경우 대역시 발생한 수수료와 원가 등은 자본화 하지만 상각하지는 않으며, 원가와 시가중 저가를 사용한다. 이 때 원가에는 자본화한 수수료 등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며, 평가는 group별 혹은 건별로 할 수 있되, 특정 group별로 시가산정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③ 투자용 부동산저당대출(mortgage loans held for investments)의 설정시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 등은 자본화하고 상각한다.

6. 감액손실이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에 대한 비교

파생상품에 연계되지 않지만 감액손실이 있는(non-hedge, impairment) 금융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에서는 감액손실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손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식의 경우 공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고려시키는 채권재조정 시점 및 대차대조표 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재조정 시에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사용하고, 고정금리인 경우 당초 이자율로 할인하지만, 변동금리인 경우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며,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되 손실의 환원이 가능하다.

<표 9> 파생상품에 연계되지 않지만 감액손실이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감액 손실의 요건	없음	장부가액이 추정회수가 능액 보다 큰 경우	대출채권의 계약조 건상의 금액을 해당 기일에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실 할 때
감액손실 을 고려 해야 하는 객관적 증거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계약 위반시 -부도나 재조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질적인 시장성 상실 -과거 역사적인 패턴	국제기준과 유사함
감액손실 검토시기	채권재조정 시점 및 대차대조표일	-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정가치가 신뢰할 수 있게 측정될 수 없어서 원가로 계상한 금융자산 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반드시 검토해야 함.	일시적이 아닌 가 치 하락이 요건임
적용방법	대출채권, 채권재조정 및 투자유가증권으로 구 분하여 달리 적용함	원가 적용자산과 공정가 치 적용자산으로 구분하 여 달리 적용함	인급 없음
손익처리	-당기손익으로 처리 (투자유가증권은 손 실만 인정) -손실의 환원가능	-당기손익으로 처리 -손실의 환원가능	-당기손익으로 처리 -대출채권만 손실의 환원가능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거의 경험 및 업계관행을 고려하여 비율을 설정토 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감독원 기준을 수용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이 경우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손실의 환원이 가능하지만, 대출채권은 총당금 설정방식으로 환원가능하며, 투자유가증권은 감액손실만 계상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장부금액이 추정회수가능액 보다 큰 경우⁵³⁾를 감액손실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시기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적용방법은 원가 적용자산과 공정가치 적용자산으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다.

<표 10> 대손충당금 설정

구 분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
회수가능채권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회수불확실	비율설정	비율설정	비율설정
회수불가능	--	상각	상각

원가 적용자산에 대한 새로운 장부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원칙을 보면,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우선 적용되지만, 관찰 가능한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담보자산의 처분이 확실하다면 담보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적용 가능하다.

둘째, 적용이자율은 당초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변동이자율인 경우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며, 단기간은 할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손익처리 등을 보면,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손실의 환원이 가능하다.

넷째, 개별단위 혹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적용이 가능하며, 직접 차감 혹은 총당금설정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자산의 새로운 장부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53) 이 때 회수가능액은 순판매가격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첫째, 지분증권은 현재의 공정가치를 채무증권은 회수가능액, 즉 현재시장이자율로 할인된 현재가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둘째, 차액은 기존 자본조정 처리분을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손실의 환원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계약조건상의 금액을 해당기일에 전액 회수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할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일시적이 아닌 가치하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차대조표일 이자율 혹은 감액손실 요건을 갖춘 날의 유효이자율(이는 향후 고정이자율이 됨)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손실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가치 계산시 판매비용을 차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재분류시의 차액처리에 대한 비교

재분류시 차액처리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에서는 원가로 평가되는 장기투자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토록 하고 있는 이외에는 재분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 11> 재분류시 차액처리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원가로 평가된 만기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 융자산으로 재분류	금지	당기 손익	당기 손익
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도매각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언급 없음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	언급 없음
원가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 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 용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언급 없음	당기손익	당기 손익
원가로 평가되는 중도매각 금융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 도매각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언급 없음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	채권만 당기 손익 또는 자 본조정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산이나 중도매각 금융자산 을 고정만기를 가진 만기보유자산 으로 재분류	상품유가증권 을 투자유가증 권으로 재분류 시 기존의 평	기존 자본조정 분은 만기까지 상각함	국제기준과 동일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산이나 중도매각 금융자산 을 고정만기가 없는 만기보유자산 으로 재분류	가손익은 모두 당기 손익으로 인식	기존 자본조정 분은 매각시에 일시 정리함	국제기준과 동일

주) 미국의 경우 대출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상하므로 위의 분류는 증권에만 해당됨.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에서의 금융상품의 재분류에 따
른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
용자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
며, 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도
매각자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② 원가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원가로 평가되는 중도매각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도매각자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③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자산이나 중도매각자산을 고정만기를 가진 만기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기존 자본조정분은 만기까지 상각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자산이나 중도매각자산을 고정만기가 없는 만기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기존 자본조정분은 매각시에 일시 정리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자산을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떠한 자산도 만기보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SFAS 115)에서는 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자산과 매매용 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만, 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도매각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원가로 평가되는 중도매각 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중도매각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는 매매용금융자산이나 중도매각자산을 만기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다.

8. 양도/교환/담보자산에 대한 비교

양도/교환/담보자산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양도/교환/담보자산에 대한 비교

구 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양도	개념	-통제권 이전 -필수요건은 특별목적 회사가 없다는 점 이외에 미국과 동일함	-통제권 상실 -양도자로부터 양수자의 자유처분 또는 특별목적 회사, 매매수 약정이 없을 것을 필수요건으로 함
	회계 처리	양도시 손익 인식	-양도시 손익 인식(기존 자본 조정분 고려) -부분 양도시 공정가액 비례로 인식하되 안분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자산의 가치를 영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교환	환매조건부 거래는 별도 인식	-구자산의 장부가액에 새 부채의 공정가액을 가산한 값 -신자산의 공정가액과 현금수취액을 비교하여 손익 인식함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담보자산	언급 없음	-아무 제한 없이 처분가능하면 공정가액으로 자산/부채인식 -제한 있다면 인식하지 않음	별도 규정 없음

우리 나라에서는 현행 준칙(11)과 해석(52-14)에서 금융자산의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양도로 보는 점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기준과 동일하며, 3가지의 필수적인 요건도 미국기준과 거의 동일하지만 두 번째 요건 중 특별목적 회사일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거래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기준은 양수자가 담보 또는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더라도 특별목적 회사의 목적을 충족할 경우 양도로 보는 데 반해, 우리 기준은 자유로운 담보 또는 처분을 여전히 요건으로 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고, 미국기준과 같이 경제적인 요건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환청구권부양도의 경우 상환청구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기준에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등(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즉,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서는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해석에서는 적용범위를 금융자산이라는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석(52-14)에서는 부분양도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처분/교환/담보자산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분에 대해서만 매각거래로 간주하여 우발채무로 인식하며, 환매조건부 거래는 별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환과 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38-43)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권리의 통제권을 상실한 때 양도로 인식하며, 양도자의 재취득 권리와 재매수할 의무 및 양도자의 위험부담 등을 통제권 상실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계약상의 권리가 상실(소멸 혹은 처분)될 때이며, 그 사례로 양수인이 이전된 자산에 대한 이익획득 능력을 가질 때⁵⁴⁾와 양도인이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재구매할 능력이나 권리를 갖지 못할 때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양도회사로부터의 분리(isolation)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43, 47, 51)에서 교환·처분시 인식해야 할 손익은 현금수취 금액에 신자산의 공정가액 내지 신채무의 공정가액을 가산하고 이에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과 자본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때 신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54) 이러한 사례로는 양수인이 처분이나 담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경우와 양수인이 이 채권의 혜택을 주로 가지게 되는 특별목적 회사일 경우를 들 수 있다.

으로 처리하며, 신채무의 공정가액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신채무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만약 우발채무가 있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부분양도의 경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자산의 공정가액 비례로 인식하여 배분하되, 남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남는 자산을 영으로 처리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에서는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은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가능하면 공정가액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처분에 제한이 있다면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미국기준(SFAS 125)에서도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금융자산의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에 양도로 인식한다. 양도로 인식되는 3가지의 필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자산이 양도자의 부도 발생시에도 양도자 혹은 그의 채권자로부터 분리(isolated)될 것이다.

둘째, 양수자가 담보 또는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나 혹은 특별목적 회사일 것이다.

셋째, 재구매 혹은 재판매 약정을 통해 통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양도자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차이가 있다. 또한 상환청구권부양도(transfers with recourse)의 경우에는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상환청구원(recourse obligation)의 공정가액 만큼 차감된 금액이 양도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르다.⁵⁵⁾ 미국의 기준(SFAS 125)에서는 처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처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국제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담보자산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9. 지급보증에 대한 비교

55)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지급보증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급보증에 대한 비교

구분	우리 나라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개념	언급 없음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한 준비금 -지급보증도 이러한 준비금의 일종임	국제기준과 동일
인식	지급보증충 당금으로 인 식함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의무가 있고 -자원의 유출이 일어날 것 같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 할 때 인식함	국제기준과 동일
측정	대출채권에 준하는 처리	-현재가치로 계상 -관련취득자산의 잔존가치는 언급 없음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확실할 때는 현 재의 자산으로 인식함 -매년 검토하여 환원 가능함	국제기준과 동일
기타	주식사항으 로 공시	우발채무의 일종으로 보아 해당 요건에 따라 손실 예상금액만을 채무로 인식	국제기준과 동일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에서는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출채권에 준하는 처리를 하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사용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확정지급보증 금액을 대차대조표 내에 별도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였으나, 현행 준칙에서는 지급보증 자체는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식사항으로 공시한다. 다만,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예상손실의 산정은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논리상 지급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분류되므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은행업준칙에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

대출채권의 위험과 지급보증의 위험은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지급보증과 달리 가격변동위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급보증을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한 준비금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의무가 있고 자원의 유출이 일어날 것 같고(probable: more likely than not to occur)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 할 때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 측정은 현재가치로 계상하되,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확실할 때는 현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년 검토하여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취득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에서는 지급보증을 별도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채무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해당 요건에 따라 손실 예상금액만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기준과 관련된 Issue Paper에서는 지급보증을 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관련 미래손실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채무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기준(SFAS 91)에서도 지급보증을 국제기준과 같이 우발채무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채무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해당 요건에 따라 손실 예상금액만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기준에서 지급보증을 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AICPA의 Audit Guide 등을 참고할 때 보험상품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재무제표양식 및 주석사항에 대한 비교

재무제표양식 및 주석사항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재무제표양식 및 주식사항에 대한 비교

구분	우리 나라 준칙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재무 제표 양식	별지 제시	재무제표 양식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 음	은행에 대해 특별히 요 구하는 재무제표의 양식 은 없음
주식 기재 사항	별지 양식 에서 표시	-대차대조표의 경우 고객의 위험수준 을 고려한 고객별 상품별 구분 공시 -손익계산서의 경우 성격별로 구분 공 시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 정가액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와 자산부채 항 목의 집중도(concentrations)를 주식으 로 공시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 율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대차대조표는 주요 상 품별로 구분하여 공시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함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 -소비자금융 및 일반부 문 등 부문별 공시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 는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 석사항으로 요구함

주) 미국의 주식 기재사항은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함.

우리 나라 은행회계준칙에서는 재무제표양식 사례를 별지로 제시하고, 이에서 ①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②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③ 타은행 및 금융시장과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정보, ④ 우발채무(지급보증 등)와 약정사항의 종류별 금액을 구분 표시, ⑤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등)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⑥ 대출채권,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각각에 대한 주요 국가별, 고객별 및 산업별 비율, ⑦ 중요한 외화자산·부채

의 해당 외화금액 및 미달리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⑧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가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⑨ 원금보전 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고유계정이 부담하게 될 금액, ⑩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주요거래내용(기초잔액, 기중 증감액, 기말잔액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등, ⑪ 지급보증의 종류별 충당금 설정기준 및 금액, ⑫ 후순위 차입금(사채의 발행을 통해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의 차입처별 금액과 차입조건, ⑬ 대여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금액, ⑭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양식 및 주석사항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양식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의 필수적 공시사항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한 공시 즉, 중앙은행, 다른 은행, 일반기업 등의 구분공시와 상품별 구분공시 등을 들 수 있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성격별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유가증권매매익 및 일반관리비 등을 그 성격별로 구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은행에 독특한 것으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과 자산부채 항목의 집중도(concentrations)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IAS 30)

셋째,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⁵⁶⁾ 시간계약이나 비용측면 등의 사유로 공정가액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들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IAS 32, 77)

56)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재무제표양식 및 주식사항에 대한 미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양식은 없으며,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주요 상품별로 구분하여 공시(타은행에 대한 예치금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게 이자 및 대손충당금 관련사항과, 수수료 관련사항, 유가증권매매손익 관련사항 및 일반관리비 등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식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⁷⁾(FAS 107)

셋째,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항들 외에 부문별 공시에 대한 주식공시를 예시하면서 소비자금융 및 일반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2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은행회계준칙의 구조와 재무제표의 양식 및 주식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준칙의 성격 및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은 금융업(성격상 리스는 논의에서 제외함)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및 상호

57)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신용금고업 등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준칙에서 인식과 측정기준, 관련 재무제표양식 및 공시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준칙들의 성격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특별기준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기준의 성격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형식상 및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계층구조상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이 다른 기준들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약하다. 즉, 향후 기준서, 해석서, 질의와 회신으로 구성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계층구조상 다른 기준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별도의 준칙이 존재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둘째, 특별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과 동일한 부분도 다시 언급함으로써 다른 기준 및 유사한 준칙들과 내용상 중복되는 면이 많고, 또 차이점을 별도로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다른 기준과 같은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 및 차별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 특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모든 준칙들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실무적인 불편도 따르게 된다.

셋째, 특별기준을 통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업계의 실무나 감독기준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준칙에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회계처리는 외국환관리법에서 위임한 외국환회계처리절차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보다는 거래유형이나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성격에 따라 회계기준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계기준의 적용순위상 업종이 먼저 적용

된다는 것은 논리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업종만의 특별한 처리는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래나 상품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가급적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의 구도로서 가질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단일의 금융업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금융업무의 다양화 및 금융상품의 복합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너무 상이한 주제들이 하나의 기준서에서 포괄되므로 주제별로 구성되는 타 기준서들과 다른 형식을 취한다는 점과 기준서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현행처럼 6개의 준칙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개의 준칙에서 중복된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각 준칙별로 실질적으로 고유한 내용이 없는 준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는 보험업과 기타금융기관으로 2개의 유형으로 포괄하는 방안, 은행업과 보험업 및 기타의 3개의 유형으로 포괄하는 방안,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기타의 4개의 유형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6가지 업종을 거래유형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등은 모두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업종이므로 동일한 금융상품을 금융업이나 증권업 또는 보험업에서 취급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하나의 기준서에 통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기준은 여러 기준서에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은 작성주체별, 상품별, 거래유형별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후 회계기준의 논리성과 일관성 및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하나의 기준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방안 중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유용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기준서의 주제별 접근방법과도 일관성이 비교적 강한 첫번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감독규정과 회계기준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행의 경우 감독목적의 회계기준(SAP)은 예금자에 대한 지불능력의 보장 및 정부의 통화나 재정정책상의 목표달성 등 감독목적을 위한 기준이므로 GAAP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SAP과 GAAP의 조화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GAAP에 의한 재무제표가 중심이고 주식에서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등을 보충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기준도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준서에는 별도의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AICPA의 Audit Guide에 의하면 GAAP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기본이 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각종지표 등은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준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SAP과 GAAP의 제정기구가 동일(즉, 금융감독위원회)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호 차이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감독규정이 추구하는 감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양측면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모두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경우 SAP과 GAAP를 모두 충족하는

단일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관행을 보면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대해서는 GAAP가 SAP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GAAP를 달성하면 SAP은 자동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에 외국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SAP의 일부가 GAAP상 그대로 인정되는 등 정책목적과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길 경우 그 처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GAAP는 SAP과 별개의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차이를 공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단일의 장부를 유지하고 있는 회계 실무상 두 개의 재무제표 중 어느 것이 회사의 장부와 일치하여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어느 하나는 정산표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는 GAAP에 따라 장부를 유지하고 SAP에 따른 조정사항은 별도의 정산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주석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무제표 양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0)에서는 구체적인 재무제표 양식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필수적으로 구분 공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기준에서도 은행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재무제표 양식은 없다.

우리 나라 준칙에서는 양식을 별지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준칙의 성격상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양식은 사례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보면 대차대조표의 경우 유동성배열법을 따르지 않고 주요 금융상품별로 배열하고 있다는 점과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표시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은행업의 특성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투자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모두 영업외손익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으로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시행 초기이므로 재무제표 양식은 사례의 형식으로 제시하되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영업외손익의 구성항목들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현상과, 특히 금융업의 업종별 업무영역이 무너지고 다양한 신상품, 복합상품들이 도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양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순수한 GAAP에 의한 재무제표가 이제서야 최초로 공시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복잡한 양식은 간소화하는 것이 작성자나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할 것이다.

2) 자기자본비율의 주석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0)에서는 자산부채의 만기구조와 자산부채 항목의 집중도(concentrations)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나,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기준의 경우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식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준칙(32)에서는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주식공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자본비율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비율에 따라 예금자 보험료의 요율도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정보의 구체적인 공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동 비율의 주요 구성항목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단, 최소비율에 미달할 경우 향후 달성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3) 금융상품 공정가액의 주식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2 par. 77)과 미국기준(SFAS 107)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준칙(32) 등 우리나라의 기준체계 내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액 공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개선방안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공정가액에 대한 주식공시는 요구하지 않고 일부 가능한 금융상품부터 고려하여 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액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이 공시를 강제할 경우 신뢰성 없는 정보의 산출이 우려되므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공정가액의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유가증권 등의 경우 해

당 기준서 별로 판단하여 여건이 성숙된 금융상품부터 공정가액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주식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0)에서는 은행에 독특한 것으로 자산 및 부채의 만기구조와 자산부채 항목의 집중도(concentrations) 및 일반 은행의 위험 등을 주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기준에서는 AICPA의 Audit Guide에 예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항들 외에 부문별 공시에 대한 주식공시를 예시하면서 소비자 금융 및 일반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준칙(32)에서는 고객별, 만기구조별 및 통화별 정보의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 상당히 충실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으로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32-1)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32-5) 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32-6) 대출채권,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각각에 대한 주요 국가별, 고객별 및 산업별 비율 등의 경우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 재무제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제3절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제정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0)은 은행과 유사기관 재무제표의 공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은행(금융)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

리기준이 없지만, 우리 나라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각각의 준칙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가능하면 다른 기준서와의 중복규정을 회피(특히 인식과 측정 부분)
- ② 은행(금융)업에만 관련된 회계처리문제 규정 노력
- ③ 가능한 대분류만을 규정--재무제표 본문의 단순화
- ④ 회계공시와 표시에 초점(현 준칙의 공시사항 시안을 본문에 유지)
- ⑤ 현 준칙에 개정이 필요 없는 상당한 부분은 실무지침으로 표시 즉, 현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이하 기준서 시안)은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IAS 30)과는 달리 관련 회계공시와 표시 등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등은 실무지침으로 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정방향을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의 일환으로 관련 국제회계기준 등을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전면적인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미국회계기준은 없다 하여도 국제회계기준(IAS 30) 등을 준거하고 현행 은행회계처리준칙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서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6개 금융관련 준칙을 점진적으로 금융업(은행업/증권업)과 보험업 2가지로 통합하는 방향은 유사한 기준을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은행업 등과 증권업의 기준을 통합하는 것은 금융업의 이종 업종간 통합(convergence)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은행 및 유사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은행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이 없고 다른 기준서에서 은행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준칙에서는 은행법 또는 기타 법률(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서 시안에서는 우선 주요 금융업(은행, 보험, 증권)에 대한 기초시안을 작성한 후 카드업,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업종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인 금융업 관련 종합회계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현재 본 기준서의 적용범위는 은행, 상호신용금고 및 종합금융회사로 하고 있다.

기준서 시안은 은행(금융)업의 회계처리기준서라기 보다는 IAS 30과 마찬가지로 공시·표시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준칙의 공시(본문과 주식)부분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무지침에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은행업에서만 발생하는 회계관련문제는 본 시안에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본 기준서 시안의 준거기준인 은행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IAS 30을 예금의 수신, 여신이나 증권영업 활동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실체는 실체의 형태, 규제나 감독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공시와 표시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업종간 벽이 무너지고 은행과 비은행간의 경쟁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은행과 유사한 기관의 공시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IAS 30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래의 3가지에 초점을 두어 종합적인 개정작업 중에 있다.

첫째, IAS 30에서 다른 기준서와 중복되는 부분 제거

둘째, IAS 30에서 감독과 회계규정의 수렴에 도움 고려(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

셋째, 공시강화--위험노출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정보

한편 보험관련 기준서는 제정 중에 있으며, 현재 DSOP(draft standard of principles)가 발표되어 있고, ED는 4/4분기에, 기준서 제정완료는 2003년에, 2005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준칙과 같은 국제회계기준서의 제정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

3. 복합상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보험 Issue Paper 문단 46)에서는 계약개시 시점에서 보험계약인 것은 관련 권리와 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며, 개시시점에서 보험계약이 아니었으나 일정시점 후 보험계약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기준과 현행 준칙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기준서 시안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국제회계기준(보험 Issue Paper 문단 57)에서는 복합상품의 상품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외관상 제시되었거나 계약조건으로부터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과 아닌 것으로 구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기준과 현행준칙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기준서 시안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이러한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아직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품의 회계처리는 추후 보험업준칙에서 별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감독기준(SAP)과의 조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인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 등을 보충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외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현행준칙에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업계의 실무나 감독기준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준서 시

안(문단2)에서는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목적에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지침에서는 감독기준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기업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은행의 회계는 금융감독원(구 은행감독원)에서 감독규정 등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1999년 FLC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에도 감독규정은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최소적립기준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FLC System 구축미비로 최소적립기준만을 준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도 있었다. 한편 1999년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도입 시에도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처리 등이 은행의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과는 일부 상이하게 제정된 경우가 있다.⁵⁸⁾

현재 상기와 같은 관행적인 회계처리를 축소하기 위해 기준서 문단 2에서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감독규정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과 상이할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타당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회계기준과 감독규정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두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2종류의 재무정보를 산출 관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재무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58) 예를 들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31. 해외지점의 재무제표환산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해외지점/ 자회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일괄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69조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은 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고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기 준칙 31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 은행에 적용되기 이전에 (구)은행감독규정에 있던 내용이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정과정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참여시켜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과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감독기준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공시 방법도 혼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기준을 회계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 BIS ratio)은 회계자료 이외 시장위험(market risk) 등 다양한 정보를 원천으로, 그리고 은행 모회사 이외에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까지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가 자회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의 주석에 정확한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미국에서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공시되지 않고 SEC에 제출하는 연말 공시(annual filing)서류에만 공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공시 방법에 있어서도 감독기준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보다 적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시하는 은행의 사업보고서(분기, 반기 포함)에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재무제표 양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적 재무제표 양식은 거의 포함하지 않고 주요 계정만 구분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고, 현행 준칙에서는 상당히 규정화되고 세분화된 양식

을 별지 서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현행 준칙상의 계정과목별 세부규정은 삭제하고 표준양식을 별지로 예시하도록 하였다.(표준양식은 보완검토 중임)

현행 손익계산서는 은행 내부에서 경영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양식과는 상이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은행은 내부적으로 순이자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에 대한 분석 및 대손충당금적립액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은행의 표준손익계산서 양식은 영업수익(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비용(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대손충당금전입액 포함),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어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분석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재무제표 양식을 가능한 대분류만을 규정하여 재무제표 본문을 단순화하고 주식공시를 확대하는 기준서의 제정방향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은행 내부 및 정보이용자의 경영분석을 고려하여 표준양식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수익, 이자비용, 순이자수익(net interest income), 대손충당금전입액, 충당금전입후 순이자이익(NIM), 기타영업이익, 기타영업비용, 특별손익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계정과목 등을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지금까지 상세 계정과목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이해관계자나 감독당국의 정보 요구 내용에 비추어 주식공시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에서 신탁계정은 순수실적형(vs. 원금보존형, 원금 및 최소이자보존형, 순수약정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제표에서 제외되므로 회계기준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단지 주식사

항으로 그 내용(예: 신탁업무 수행사실 및 신탁업무 실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기준도 국제기준과 유사하며, 우리 나라의 현행 준칙에서는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고유계정이 부담할 금액에 대한 주식공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순수실적형은 국제기준에 따라 그 내용만을 주식사항으로 기재하고, 보전형은 현행기준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중 은행계정 부담분을 주식공시토록 하며, 순수약정형은 은행계정에 부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첫째, 신탁업무 실패(예: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가 거의 확실한 경우 및 보존형 신탁자산의 합계가 고객에 대한 최소보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주식공시가 아닌 충당금으로 인식할 것 인지의 여부

둘째, 순수약정형 신탁계정을 은행계정에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는 경우, 계정의 명칭 및 분류, 즉, 이를 예금의 한 종류, 예를 들면 약정신탁예수금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순수약정형(개발신탁)신탁은 결과적으로 신탁자산·부채의 위험과 효익이 모두 은행계정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은행계정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다.⁵⁹⁾ 이 경우 신탁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은행계정의 해당계

59)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리금을 완벽히 보장하는 순수약정신탁의 경우에는 은행계정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형태의 신탁은 금지하는 추세이고, 또한 순수약정신탁의 자산과 부채를 은행계정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계정의 주주가 신탁계정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자칫 상법과 신탁업법과의 충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범위에 포함시켜 약정신탁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시키고 승인주체 문제가 있는 개별재무제표에는

정과목에 합산표시하고 주식으로 은행계정에 포함된 순수약정형 신탁의 자산과 부채를 요약하여 공시한다면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보전형(원금보전형, 원금 및 최소이자보전형)의 경우 현재 시가 또는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신탁결산을 하고 있고, 평가결과 발생한 손실액은 은행계정 영업손실(신탁보전금)로 인식하고 있다. 보전형의 경우 개정된 준칙에 따라 주식사항으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중 은행계정 부담분을 은행계정 재무제표상 주식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정가액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여 보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대출채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정의 및 범위

국제회계기준(IAS 30 par. 30과 IAS 39 par. 27, 66 및 IAS 32 par. 5)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에 대한 정의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기준도 유사하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에 대한 IAS 32 par. 5의 정의를 흡수·반영하였으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액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준서 시안(문단 12)에서 인식과 최초인식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9에서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출채권인지 유가증권인지 분류의 판단을 위하여 유가증권관련 회계기준서에 유가증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모사채, 전환사채, 특이한 조건이 불

은행계정 부담 손실만을 표시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고 있다.

은 증권(예를 들어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하이닉스 CB) 등에 대한 계정분류를 위하여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출자산의 평가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에서는 만기보유자산 및 자기창설대출자산은 원가로, 매매용 금융자산 및 중도매각 금융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기준(SFAS 91)에서는 일반적인 대출자산은 별도의 언급 없고(따라서 원가), 매매용 부동산대출은 저가법으로, 투자용 부동산저당대출은 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현행 준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따라서 원가).

기준서 시안에서는 대출자산을 4가지로 분류하여 만기보유자산과 자기창설대출자산은 원가로, 매매용금융자산과 중도매각금융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대출채권의 증권화 및 양도거래활성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인식과 측정을 위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의 4분류 방법의 현실적 합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정상 및 부실 대출자산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SPC를 설립하고 부실자산을 매각하여 은행채무제표상 동 부실대출자산을 처리(매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SPC를 통한 부실자산 매각 시 은행은 동 SPC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대부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동 부실자산으로 인한 위험은 은행이 매각회계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정은행의 US GAAP 재무제표를 볼 경우 이러한 SPC를 통한 회계처리는 거의 대부분 매각회계로 처리되지 않고 차입거래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아

직 대출자산 매매시장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동 부실자산을 달리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을 감안할 때, 대출자산을 만기보유자산 및 자기창설대출자산, 매매용금융자산 및 중도매각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각각 원가 및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 매각 시장이 NPL로 국한되어 있으며, 매각구조도 개별적으로 매각가액이 검증되지 않는 Pool 형태로 진행되어 공정가액 평가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신뢰성있는 시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실제 공정가액 평가가 곤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대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회계처리,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내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 및 은행내부시스템이 선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연구가 있었고,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회계처리에 대한 FASB의 상세한 Implementation Guidance 및 Interpretation과 BIG 5 회계법인의 자세한 Interpretation 등이 있는 후에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금융시장 및 은행의 내부시스템을 감안할 때 공정가액 평가 대상 대출채권을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분간 대출채권은 원가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순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공정가액 회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발달정도를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액손실의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IAS 30 par. 43, IAS 39 par. 73, 95)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우리 나라 기준의 대손충당금 및 채권재조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기준(SFAS 114)에서는 감액손실대상 대출채권을 매 회계연도 말에 원칙적으로 미래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여 충당금을 인식토록 하나, 실무적으로 시가법 또는 담보물권의 공정가액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준칙에서는 대출채권의 감액손실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채권재조정과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본문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부록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의 세부요건에 대한 현행 준칙(제27조), 은행감독규정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제2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를 반영하였으며, 채권재조정의 경우는 현행준칙(제29조)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현재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규정에 의거하여 대출채권을 5단계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최소 정상 0.5% 이상, 요주의 2.0% 이상, 고정 20% 이상, 회수의문 50%이상, 추정손실 100%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A은행의 경우에는 기업금융(corporate lending) 위주이고, B은행의 경우에는 가계금융(consumer lending) 위주인 것과 같이 은행별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개별은행의 여신공여정책에 따라서 동일한 기업금융을 하고 있을 지라도 그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더라도 각각의 분류별로 그 손실율은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지침에 감독규정의 일률적인 대손설정율을 명시한다는 것은 기준서 본문 문단 39에서 명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라는 문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거래처(차주)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여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하고, 연체여부, 담보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을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처의 분류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도 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설정율을 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상각 처리하지만,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동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현재 은행은 금융감독규정에 따라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동 준칙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미국공인회계사회가 발행하는 은행업 회계감사실무지침서에 5단계 분류에 대한 일반원칙이 언급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은행의 회계처리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한빛은행도 FLC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건전성을 요주의 4단계, 고정 6단계, 회수의문 10단계 등 총 22단계로 분류하고, 신용평가등급, 담보여부 등을 고려한 상이한 손실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현재 적용중인 5단계로 정의하는 등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단계별 적립율은 개별은행이 과거경험을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지급보증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IAS 39 par. 73, 95 및 IAS 30 par. 7, 16, 26 등)에서는 지급보증을 별도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채무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해당요건에 따라 손실예상금액을 채무로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기준(SFAS 91)도 국제기준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행 준칙에서는 지급보증 자체는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며,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 추정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우발채무의 확정분만 대차대조표에 인식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은행은 은행감독규정을 기업회계기준으로 준용하여 신용악화 등에 의하여 부실화가 확실시되는 지급보증 중 고정이하로 분류된 손실추정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확정지급보증 이외에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된 지급보증도 대출채권과 동일한 신용위험을 가지므로 은행별로 과거 손실경험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서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충당금 설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논리상 지급보증은 보험이므로 지급보증채무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다만 우발채무의 확정분만 대차대조표에 인식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법중 신용위험(Credit Risk) 인수 및 지급보증에 특화된 보증보험은 일반손해보험(자동차, 화재 해상보험 등) 또는 생명보험과는 달리 금융/증권업의 기능에 오히려 가까우므로 금융/증권업 기준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외화환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기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현행 준칙(30, 31 및 34)에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및 해외지점 등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외국환회계처리는 외국환관리법에서 위임한 외국환회계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관련 기준서를 적용토록 하였다.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제 68조 및 6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토록하나, 현행 준칙에서는 대차대조표의 적절한 환율(통상 결산일 환율)로 환산토록하여 실무상 혼선을 초래하여 왔다.

은행의 외화환산회계를 일반기업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외화환산회계기준서에서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토록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기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현행 준칙(26)에서는 지분법 적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는 특정법률(즉 은행법)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15%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기준서 시안에서는 지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금융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은행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본 기준서를 적용토록 하였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의 자회사 개념을 특별히 인정하여 일반기업과는 다른 자회사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1.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대한 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서 시안에서는 현금흐름표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준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흐름표의 경우는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업 부분의 현금흐름표 부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업기준서에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여 포괄적인 기준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현행 준칙과 기준서 시안을 검토하여 은행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업에 대한 회계기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은행업의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을 비롯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서를 주로 비교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은행회계의 특징과 활동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은행의 회계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주요 회계처리 내용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주요 내용 및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주요 내용을 국제 회계기준 및 미국의 기준서와 비교 검토하여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칙의 성격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기준서의 주제별 접근방법과도 일관성이 비교적 강한 단일의 금융업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감독규정과 회계기준의 이원화에 대하여는 GAAP는 SAP와 별개의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무제표의 양식 및 주식공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 양식에 대하여는 은행업준칙의 시행 초기이므로 재무제표 양식은 사례의 형식으로 제시하되 가급적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기자본비율의 주석공시에 대하여는 감독기구 등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동 비율의 주요 구성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단, 최소비율에 미달할 경우 향후 달성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③ 금융상품 공정가액의 주석공시에 대하여는 당분간 전반적인 공정가액에 대한 주석공시는 요구하지 않고 일부 가능한 금융상품부터 고려하여 보도록 한다.

넷째,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준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서나 준칙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조항 및 다른 기준서의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회계처리방법은 특별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신탁계정의 인식 및 측정방법을 재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인식과 측정을 위한 자산의 구분기준을 상품별 접근방법에서 보유의도 및 보유능력을 중시하는 목적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분류 그룹별로 취득, 평가 및 양도 등의 사건별로 인식과 측정기준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④ 채권재조정 및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관행을 탈피하여 감액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 때 감액에 대한 인식과 측정은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한다.

끝으로 현재 진행중인 은행업 회계기준서 시안을 중심으로 하여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서 시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6개의 금융 준칙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현 준칙의 공시(본문과 주석)부분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무지침에 수용하고 있는데, 다른 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은행업에서만 발생하는 회계관련문제는 본 시안에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상품에 대하여는 복합상품의 회계처리는 추후 보험업 준칙에서 별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감독기준(SAP)과의 조화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정과정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참여시켜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과 차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기준을 회계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공시 방법도 혼동시키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제표 양식을 가능한 대분류만을 규정하여 재무제표 본문을 단순화하고 주석공시를 확대하는 기준서의 제정 방향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상세 계정과목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이해관계자나 감독당국의 정보 요구 내용에 비추어 주석공시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신탁업무 실패와 순수 약정형(개발신탁)신탁 및 보전형(원금보전형, 원금 및 최소이자보전형)에 대한 처리방법,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출채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② 금융자산의 4분류 방법의 현실적합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가액 회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발달정도를 감안하여 제도

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감액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은행업 회계기준서에서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현재 적용중인 5단계로 정의하는 등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단계별 적립율은 개별은행이 과거경험을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덟째, 지급보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논리상 지급보증은 보험이므로 지급보증채무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다만 우발채무의 확정분만 대차대조표에 인식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외화환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은행의 외화환산 회계를 일반기업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외화환산회계기준서에서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토록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째, 지분법 및 연결채무제표에 대하여는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의 자회사 개념을 특별히 인정하여 일반기업과는 다른 자회사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에 대하여는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업 부분의 현금흐름표 부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실무나 정보이용자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현장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은행 실무자나 은행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001. 12. 14.
-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계해설, 2001. 1.
- 문종진·정익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영역확대 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경제분석, 제2권 제4호, 1996.11.
- 민유성,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에 대한 토론 자료, KAI 제51회
Forum, 한국회계연구원, 2002. 2. 1.
- 오기원, 우리 나라 은행업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회계
연구원, 2000. 7. 3.
- 외국환 회계처리기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 2001. 6. 29 신설.
- 최현돌,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에 대한 토론 자료, KAI 제51회
Forum, 한국회계연구원, 2002. 2. 1.
-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0. 12).
- 한국주택은행, 은행회계(계정과목 해설), 1999.
- 회계기준위원회, 은행(금융)업 회계기준서 시안, 2001. 5. 25.
- 회계기준위원회,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001. 12. 20.
- 회계처리기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 황인태·조성표·이재경·박희춘, 은행업회계처리기준제정(안), 회계학 연구
보고서, 1998, 8-99

(외국문헌)

- AICPA, 1999, *Industry Audit Guide - Audit of Banks and Savings Institutions*.
- FASB, 197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SFAS No. 5.
- FASB, 1977, Accounting by Debtors and Creditors for Troubled Debt Restructurings, SFAS No. 15.
- FASB, 1986, Accounting for Nonrefundable Fees and Costs Associated with Originating or Acquiring Loans and Initial Direct Costs of Leas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13, 60, and 65 and a rescission of FASB Statement No. 17, SFAS No. 91.
- FASB, 1993, 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5 and 15, SFAS No. 114.
- FASB, 1993,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 SFAS No. 115.
- FASB, 1994, 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 Income Recognition and Disclosur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14, SFAS No. 118.
- FASB, 1995, Accounting for Mortgage Servicing Righ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65, SFAS No. 122.
- FASB, 1996, Accounting for Transfers and Servicing of Financial Assets and Extinguishments of Liabilities, SFAS No. 125.
- FASB, 1998,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SFAS No. 133.
- IASC, 1994,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IAS No. 30.
- IASC, 1998, Financial Instruments : Disclosure and Presentation, IAS No. 32.
- IASC, 1998,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AS No. 37.
- IASC, 1998, Financial Instruments :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 No. 39.